

2020년도 세실극장 대관규약

제1조(목적)

이 규약은 서울연극협회(이하 '서협') 세실극장(이하 '공연장') 대관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, '서협'과 대관자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창달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

제2조(대관의 정의)

대관이라 함은 공연, 연습, 녹음, 녹화 등을 위하여 시설, 설비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대관자의 정의)

대관자란 정기 및 수시대관을 통하여 '서협'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주최자(기획사 또는 개인)를 말한다.

제4조(대관의 종류)

-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정기대관은 차기년도 공연일정에 관한 대관으로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 '서협'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, 승인,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.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공연취소 등으로 인한 잔여일정 발생 시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관을 말한다.
- ② 대관은 사용목적에 따라 준비대관과 공연대관, 추가대관이 있으며 공연 목적 이외의 방송, 영화, CF, 음반제작, 세미나를 위한 행사대관으로 구분한다. 단, 영화, 드라마 등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공연물 중에서 공연자 및 대관주최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 공연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따른다.
- ③ 원활한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이후의 대관도 가능하다.

제5조(대관료)

①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여 '서협' 회장이 정한다.

가. 대관료란 공연을 위하여 무대 및 공연장의 기본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, 준비대관과 공연대관, 추가대관, 행사대관으로 구분한다.

나. 기본 시설 사용료

부가가치세 포함

구분		시간	공연 횟수	금액	비고
준비대관	정단체	10:00 ~ 22:00	1일	165,000원	7일 이상 대관 시 적용
	비단체			220,000원	
공연대관	정단체	16:00 ~ 22:00	1일 1회	330,000원	
	비단체			440,000원	
	정단체	12:00 ~ 22:00	1일 2회	495,000원	
	비단체			660,000원	
추가대관	정단체	16:00 ~ 22:00	1일 1회	165,000원	
	비단체			220,000원	
행사대관	정단체	10:00 ~ 22:00	1일 1회	660,000원	
	비단체			880,000원	
보증금		-	-	300,000원	
휴무일		10:00 ~ 22:00	1일	0원	

※ 준비대관료 : 총 7일 이상 대관 시 적용(7일 미만 대관 시 1일 1회 공연대관료와 동일)

※ 대관기간 중 또는 후, 장비 파손(조명램프 등), 쓰레기 미처리 비용 보증금에서 차감 반환

② 대관자는 대관계약 체결 시 전체대관료의 30%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, 잔금은 공연준비대관일 3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. 단, 대관기간이 21일 이상 장기 공연의 경우, 공연준비대관일 6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.

③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조치 한다.

가. 공연장 구내에서 발생한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납부액의 100%

나. 국가적 행사, 서울특별시 또는 '서협'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납부한 사용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

다. 사용예정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음의 비율로 반환한다.

사용예정일 기준

해지 시점	119일 이내	120~179일 이내	180~239일 이내	240~299일 이내	300일 이상 전
반환금	반환 안함	납부계약금 중 30%	납부계약금 중 40%	납부계약금 중 60%	납부계약금 중 90%

제6조(대관신청)

- ① 대관희망자는 '서협' 홈페이지에서 대관공지 및 접수 일정을 확인하고, 제공된 서식으로 '서협'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.
- ②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등은 소정의 양식으로 같음하며, 신청양식(세실극장 대관신청서, 세실극장 공연계획서, 저작권사용 동의서)을 '서협'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대관담당자에게 송부한다.
- ③ 2020년 대관 내용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아래의 일정에 준하는 공연의 대관 접수를 받는다.

시즌	상반기						하반기					
월	1	2	3	4	5	6	7	8	9	10	11	12
구성	일반		극장정비기간(세실극장 옥상개방 공사)						중, 고교생		일반	
기획 의도	청소년 및 일반관객								청소년		청소년 및 일반관객	

- ④ '서협'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 - 가.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- 나. '서협'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'서협'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- 다. 아래 8조에 의해 신청 자격이 정지 중인 사람의 신청
 - 라.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
 - 마. 아마추어 공연단체 또는 개인
 - 바. 초, 중, 고, 대학생 개인 및 단체(단, 개인이라 할지라도 수상경력 등 일정 이상의 특별한 소질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)
 - 사.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

제7조(대관승인)

- ① '서협'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유선으로 통보할 수도 있다.
- ②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「대관승인서」에 명시된 일자까지 '서협'과 계약을 체결한다. '서협' 방문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'서협'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 조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협의하여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8조(대관승인 취소 및 신청자격 중지)

다음과 같은 경우 '서협'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. 또한, '서협'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상 대관신청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.

- ① '서협'이 지정한 기일 내에 대관료 계약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②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
- ③ 기타 '서협' 사업에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④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- ⑤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
- ⑥ 이 규약을 위반한 경우

제9조(내용 및 일정변경)

- ① 대관자는 대관승인 시 명시된 공연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.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부사항(공연 명칭, 세부 일정 등)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'서협'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공연장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해 공연을 하지 않은 경우이라도 대관료는 반환되지 않는다.

제10조(대관취소)

- ① 대관자는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공연 준비 시작 90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고 '서협'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5조 4항에 의하여 처리되며, 귀책사유인 경우 차후 대관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.

제11조(공연취소 및 중지)

- ①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,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, 기타 입장권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5조 4항에 의거 처리된다.
- ③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, '서협'은 대관자에게 취소된 공연 회차에 해당하는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 및 환불,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외에 상호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.

제12조(회원제 인정 및 유보석)

- ① 대관자는 '서협' 회원 제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.
- ② '서협'은 공연의 홍보를 위해 대관자와 협의하여 회당 최소 4석 이상의 좌석을 유보할 수 있다.(단, 1일 4장의 초대권으로 대처할 수 있다.)

제13조(홍보물 협의)

- ①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, 홍보물 제작 시 '서협'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대관자는 홍보용 포스터 및 극장 내 부착되는 홍보물에 '서협'이 제공하는 규격을 따라야 하고, 홍보물 부착 시 '서협'이 지정한 규격의 홍보물을 내, 외벽에 부착할 수 있으며 대관기간 내로 한정한다.
- ③ 대관자는 '서협'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 포스터 등의 홍보물을 부착·설치할 수 없다.

제14조(관리의무 및 공연진행 준수사항)

- ①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'서협'의 기본시설, 부대설비와 관련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② 대관자는 '공연장'의 대관 사용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, 대관 신청한 공연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여 공연 또는 사용할 수 없다.
- ③ 대관자는 '공연장'의 대관 사용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할 경우 '서협'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④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(공연장 내,외)에서 발생하는 사고, 인명피해(관객, 공연 관계자 모두 포함), 화재, 물질적 손실 등 민, 형사상의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진다.
- ⑤ 대관 계약 후 대관자는 '서협'측 대관 담당자와 공연 1주일 전까지 공연장 점검을 거쳐야 하며 이때 재해대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, 철수 당일 공연장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. 이 때, 대관자는 '서협'이 요구하는 진행일정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.
- ⑥ 공연종료 후 시설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비용은 대관자(보증금)가 부담해야 한다.
- ⑦ 공연 매표, 수표 진행요원은 대관자 측에서 진행한다.
- ⑧ 대관자는 '서협' 정회원에게 10,000원, 원로회원에게 무료로 공연 관람을 제공한다.
- ⑨ 대관자는 세실극장에 속한 화장실, 로비, 매표소 등의 기타시설물에 대해 청소, 관리 및 쓰레기 등 오물 처리를 책임진다.

제15조(입장제한)

'서협'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대관자에게 관람자의 입장거절 혹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- ①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
- ②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- ③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

제16조(항변권)

- ① 대관자는 '서협'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, 공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항변할 수 있다.
- ② '서협'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'서협'은 그에 따른 배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7조(규약변경 승인 등)

- ① 이 규약을 변경할 경우 '서협'은 대관자에게 변경규약의 시행 1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. 대관자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,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'서협'에 서면접수 해야 한다. 만약 대관자가 위 기한 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② 제1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.

제18조(규약의 효력)

본 규약은 '서협'과 대관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.

제19조(규약위반시의 책임)

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,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.

제20조(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)

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'서협'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제21조(관할법원)

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, '서협'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.

제22조(적용시기)

본 규약은 2020년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.